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2
----------	------

제출년월일 : 2007년 1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
-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법령의 법명 변경 및 관련조문의 명확화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
-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2. 주요내용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는데 있어, 감면요건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이 하, 전용면적 85㎡,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로 정정. (제7조1 개정)
- 관계법령의 법명변경에 따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정정,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 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정정. (제8조 개정)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제8조, 제42조1항을 제5조, 제7조, 제9조, 제47조1항으로 정정. (제10조 개정)
- 「지방세법」 제266조3항의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산림조

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 (제10조의1 신설)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경감율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 2009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또한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2008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 2009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8조 정정)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에 50을 경감함에 있어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 (제20조 정정)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지방공사(공단을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정. (제21조 정정)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

첨부 1. 관계법령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3.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1부.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 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8조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을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0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의1(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하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기금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생략)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p>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p>제1조(목적) ----- 제9조 ----- ----- ----- ----- ----- ----- 제7조의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 호에서 정하는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 5.(현행과 같음)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p>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각호의 어느 하나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p> </p>

2. ~ 3.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 -----

제10조의1(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부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
————
————
————
————
————
————
————
————
————

관계법령

도서관법

[법률 제8069호, 2006.12.20.일부개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과학관육성법

[법률 제8370호, 2007.4.11]

제6조 (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제천시 공고 제 2007 - 1370호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22.

제 천 시 장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
-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법령의 법명 변경 및 관련조문의 명확화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
-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3. 주 요 내 용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는데 있어, 감면요건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이 하, 전용면적 85㎡,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로 정정. (제7조1 개정)
- 관계법령의 법명변경에 따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정정,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

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정정. (제8조 개정)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제8조, 제42조1항을 제5조, 제7조, 제9조, 제47조1항으로 정정. (제10조 개정)
- 「지방세법」 제266조3항의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 (제10조의1 신설)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경감율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12월31일 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 2009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또한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2008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 2009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8조 정정)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에 50을 경감함에 있어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 (제20조 정정)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지방공사(공단을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정. (제21조 정정)

4.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1일까지 제천시장(참조 : 세무부과팀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 641-5564, FAX 641-557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시·군 세감면조례 표준안

○○도○○시·군 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00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00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

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파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조례 범위 내에서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조정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8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

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00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00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00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00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5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 안에서, 동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제2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00 농공단지
2. 00 농공단지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함.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제32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00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00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00도00시·군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

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00시(군)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초 세액	감면 세액
감면사유	00도 00시(군)세감면조례 제00조			
00도 00시(군)세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input checked="" type="radio"/>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00도 00시 (군)세 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 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 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u>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 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p><u>제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p>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p>	<p>◦'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p>
<p><u>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1. (생략)</p>	<p><u>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호에서 정하는 -----</u></p> <p>-----</p> <p>1. (현행과 같음)</p>	<p>◦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p> <p>◦「도서관 및 도서관전홍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06.10.4)</p>

<p>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도서관 및 도서관 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p>	
<p>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략) 3. (생략)</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p>	<p>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p> <p>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② ————— 제47조제1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p><신설></p>	<p>제1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구매·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

	<p><u>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p> <p><u>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p> <p><u>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u></p>	
<p>제19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u>2007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p>	<p>제19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p> <p>----- <u>2009년 12월 31일까지</u> -----</p> <p>1. -----</p> <p>-----</p> <p>-----</p> <p><u>2008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p> <p>----- <u>2008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p>	<p>•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p>

<p><u>으로 한다.</u></p> <p>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안의 <u>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u>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u>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_____ <u>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u>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u>지방공사, 지방공단 및</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p>
--	--	---